

[일련번호 : 107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금 반납 관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◻◻과는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·임금지급 등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6조(보험료의 부담), 제78조(보험료의 납부기한)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(보험료의 부과 징수)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,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9조(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)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9(보험료의 정산)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당시 보수월액에 대해 보험료를

산정하여 납부하고 퇴직 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당초 산정 징수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. 따라서 산정·징수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이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등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기간제근로자 퇴직 등에 따라 발생한 4대보험료 정산금은 근로자별로 반납 대상 보험료의 종류, 반납 사유 및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·관리하여야 함에도, **◆◆**과는 기간제근로자 퇴직 등에 따른 4대보험료 정산금 반납 시 총괄 금액과 대상 인원만 기재하고, 개별 근로자별 반납 대상 보험료 항목, 대상자별 반납금액 및 반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반납금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, 반납의 원인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금 반납 시 대상자별 세부 내역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관련 업무에 대하여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